

의안번호	2204213
의 퇴 인	송언석의원
회 답 일	2024.9.26.
추 계 번호	24E35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본공제 물가연동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기본공제금액을 매년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
- 재정수입 감소는 2025년 5,013억원, 2029년 1조 9,319억원 등 2025~2029년 5년간 총 5조 6,221억원(연평균 1조 1,244억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기본공제 제도에 물가연동제 도입 (안 제50조제1항)	-5,013	-7,623	-9,962	-14,304	-19,319	-56,221	-11,244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50조1항 (기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본공제금액을 매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조정 － (현행)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1명당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본인 및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 (개정안) 1명당 공제금액을 15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0조1항 (기본공제)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4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는 2025년부터 세수효과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징수기준)
- 2024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년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전제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2024.9.)을 따른다고 전제
 - 소비자물가상승률(%): ('24) 2.5 ('25) 2.1 ('26) 2.0 ('27) 2.0 ('28) 2.0 ('29) 2.0
- 총급여규모(종합소득규모)별 1인당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은 향후 5년간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명목GDP성장률)을 따라 증가한다고 전제
 - 명목임금상승률(%): ('24) 3.2 ('25) 3.6 ('26) 3.9 ('27) 3.8 ('28) 3.8 ('29) 3.8
 - 명목경제성장률(%): ('24) 6.2 ('25) 4.2 ('26) 4.1 ('27) 4.0 ('28) 4.0 ('29) 3.9
- 물가연동제 도입 후 기본공제금액 변동에 따른 산출세액의 변화를 세수효과로 전제

- 기본공제 제도 개편에 따른 1인당 산출세액의 변화가 크지 않아¹⁾ 산출세액의 변동으로 인한 세액공제액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가정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감면 실적

- 2022년 근로소득자(결정세액 있는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대한 기본공제 규모는 각각 36.5조원, 24.1조원으로 각각 2017~2022년 동안 연평균 3.4%, 7.0% 증가

[표 2]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규모 추이: 귀속연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적용인원	11,353	12,109	12,237	12,916	13,629	12,449
(증가율)	(7.0%)	(6.7%)	(1.1%)	(5.5%)	(5.5%)	(5.1%)
공제금액	324,554	340,508	342,641	353,294	364,928	345,185
(증가율)	(5.1%)	(4.9%)	(0.6%)	(3.1%)	(3.3%)	(3.4%)

주: 결정세액 있는 자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규모 추이: 귀속연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적용인원	6,905	7,463	7,844	9,334	10,270	8,363
(증가율)	(7.9%)	(8.1%)	(5.1%)	(19.0%)	(10.0%)	(9.9%)
공제금액	180,484	189,941	193,490	223,350	240,548	191,745
(증가율)	(5.3%)	(5.2%)	(1.9%)	(15.4%)	(7.7%)	(7.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 방법

- 현행 기준 향후 5년간의 소득규모별 1인당 과세표준을 전망한 후, 물가연동제 도입에 따른 연도별 기본공제금액 변화분을 반영하여 개정안 기

1) 근로소득세 1인당 최대 22만원, 종합소득세 1인당 최대 21만원

준 과세표준 전망치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1인당 산출세액
변화분에 적용 인원(전망치)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세수효과 산출

- 총급여규모(종합소득규모)별 1인당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은 향후 5년간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명목GDP 성장률) 전망(2024.9.)을 따른
다고 가정

[표 4] 1인당 총급여액 전망 : 귀속연도 기준

(단위: 백만원)

총급여 규모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1천만 이하	4.9	5.1	5.3	5.5	5.7	5.9
1.5천만 이하	15.1	15.7	16.3	16.9	17.5	18.2
2천만 이하	18.7	19.3	20.1	20.8	21.6	22.4
3천만 이하	26.5	27.5	28.6	29.6	30.8	31.9
4천만 이하	36.9	38.2	39.7	41.2	42.8	44.4
4.5천만 이하	44.9	46.5	48.3	50.1	52.0	54.0
5천만 이하	50.2	52.0	54.0	56.1	58.2	60.4
6천만 이하	58.0	60.1	62.4	64.8	67.2	69.8
8천만 이하	73.2	75.9	78.8	81.8	84.8	88.0
1억 이하	94.0	97.5	101.2	105.0	109.0	113.1
2억 이하	137.0	142.0	147.5	153.0	158.8	164.8
3억 이하	250.4	259.5	269.5	279.7	290.2	301.1
5억 이하	394.4	408.8	424.5	440.6	457.2	474.4
10억 이하	702.8	728.4	756.4	785.0	814.6	845.3
10억 초과	2,169.6	2,248.5	2,335.1	2,423.4	2,514.7	2,609.5

주: 2022년 귀속 자료를 기준으로 전망

[표 5] 1인당 종합소득금액 전망 : 귀속연도 기준

(단위: 백만원)

종합소득금액 규모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1천만 이하	5.8	6.1	6.3	6.6	6.8	7.1
2천만 이하	16.0	16.7	17.4	18.1	18.8	19.5
3.5천만 이하	28.9	30.1	31.4	32.6	33.9	35.2
4천만 이하	41.0	42.8	44.5	46.3	48.1	50.0
5천만 이하	49.0	51.0	53.1	55.3	57.5	59.7
6천만 이하	60.0	62.6	65.1	67.7	70.4	73.2
8천만 이하	75.6	78.8	82.0	85.3	88.7	92.2
1억 이하	97.9	102.0	106.2	110.4	114.8	119.3
2억 이하	148.6	154.9	161.2	167.7	174.4	181.2
3억 이하	265.1	276.3	287.6	299.1	311.1	323.2
5억 이하	415.2	432.6	450.4	468.4	487.1	506.1
7억 이하	643.1	670.1	697.6	725.5	754.5	783.9
10억 이하	908.9	947.1	986.0	1,025.4	1,066.4	1,108.0
10억 초과	2,821.6	2,940.1	3,060.6	3,183.0	3,310.4	3,439.5

주: 2022년 귀속 자료를 기준으로 전망

- 2022년 귀속 1인당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대비 과세표준 비율이 향후 5년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전제²⁾하에, 1인당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전망치에 동 비율을 곱하여 연도별 1인당 과세표준 전망
 - 현행 기준 향후 5년간의 1인당 과세표준에 물가연동제 도입에 따른 연도별 기본공제금액 증가분을 차감하여 개정안 기준의 연도별 1인당 과세표준 전망
 - 1인당 기본공제금액 증가분은 2022년 귀속 총급여규모(종합소득규모)별 소득세 신고자 1인당 기본공제대상자 수(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수)가 향후에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총급여규모별 1인당 기본공제대상자 수에 연도별 1인당 기본공제금액 변화분(현행 대비 기본공제금액 증가분)을 곱하여 산출

[표 6] 물가연동제 도입에 따른 연도별 기본공제금액 변화

(단위: 만원)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기본공제금액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현행(A)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개정안(B)		153.8	157.0	160.1	163.3	166.6	169.9
변화분(B-A)		3.7	7.0	10.1	13.3	16.6	19.9
(소비자물가상승률, %)		(2.5)	(2.1)	(2.0)	(2.0)	(2.0)	(2.0)

주: 개정안의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기본공제금액은 2024년부터 전년도 1인당 기본공제금액에 당해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

2) 최근 5년(2018~2022, 귀속연도) 동안 1인당 총급여 대비 과세표준 비율(결정세액 있는 자 기준)은 '18년 60%, '19년 60%, '20년 59%, '21년 61%, '22년 61%로 대체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총급여 규모별로도 큰 변동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

[표 7] 총급여규모별 1인당 기본공제금액 변화분 전망 : 근로소득세

(단위: 명, 백만원)

총급여 규모	1인당 기본공제대상 인원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1천만 이하	-	-	-	-	-	-	-
1.5천만 이하	1.0	0.04	0.07	0.10	0.13	0.17	0.20
2천만 이하	1.0	0.04	0.07	0.11	0.14	0.17	0.21
3천만 이하	1.1	0.04	0.08	0.11	0.15	0.18	0.22
4천만 이하	1.3	0.05	0.09	0.13	0.17	0.21	0.25
4.5천만 이하	1.5	0.06	0.10	0.15	0.20	0.25	0.30
5천만 이하	1.7	0.06	0.12	0.17	0.23	0.29	0.34
6천만 이하	2.0	0.08	0.14	0.21	0.27	0.34	0.40
8천만 이하	2.5	0.09	0.17	0.25	0.33	0.41	0.50
1억 이하	2.8	0.10	0.19	0.28	0.37	0.46	0.55
2억 이하	3.0	0.11	0.21	0.30	0.40	0.50	0.60
3억 이하	2.9	0.11	0.21	0.30	0.39	0.49	0.59
5억 이하	2.7	0.10	0.19	0.28	0.36	0.45	0.54
10억 이하	2.6	0.10	0.18	0.26	0.35	0.43	0.52
10억 초과	2.4	0.09	0.17	0.25	0.32	0.40	0.48

주: 총급여규모별 1인당 기본공제대상 인원 수에 연도별 1인당 기본공제금액 변화분(현행 대비 기본공제금액 증가분)을 곱하여 산출

[표 8] 종합소득규모별 1인당 기본공제금액 변화분 전망 : 종합소득세

(단위: 명, 백만원)

종합소득 규모	1인당 기본공제대상 인원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1천만 이하	1.2	0.04	0.08	0.12	0.16	0.20	0.24
2천만 이하	1.5	0.06	0.10	0.15	0.20	0.24	0.29
3.5천만 이하	1.7	0.06	0.12	0.17	0.23	0.28	0.34
4천만 이하	1.9	0.07	0.13	0.19	0.26	0.32	0.38
5천만 이하	2.0	0.08	0.14	0.20	0.27	0.33	0.40
6천만 이하	2.1	0.08	0.15	0.21	0.28	0.35	0.42
8천만 이하	2.3	0.09	0.16	0.23	0.30	0.38	0.45
1억 이하	2.3	0.09	0.16	0.24	0.31	0.39	0.47
2억 이하	2.4	0.09	0.17	0.24	0.32	0.40	0.48
3억 이하	2.4	0.09	0.17	0.24	0.32	0.39	0.47
5억 이하	2.4	0.09	0.16	0.24	0.31	0.39	0.47
7억 이하	2.3	0.09	0.16	0.24	0.31	0.39	0.47
10억 이하	2.3	0.09	0.16	0.24	0.31	0.39	0.46
10억 초과	2.2	0.08	0.15	0.22	0.29	0.36	0.43

주: 종합소득규모별 1인당 기본공제대상 인원 수에 연도별 1인당 기본공제금액 변화분(현행 대비 기본공제금액 증가분) 곱하여 산출

- 현행 및 개정안의 총급여규모별 1인당 과세표준에 명목세율(6~45%)을 곱하여 1인당 산출세액을 구하고, 개정안에 따른 1인당 산출세액 변화분에 적용 인원 전망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최종 세수효과 산출
 - 1인당 산출세액=1인당 과세표준 × 명목세율(6~45%)
- 향후 5년간 총급여규모(종합소득규모)별 기본공제 신청자 수 증가율은 2016~2020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을 따른다고 전제
 - 개정안 적용 시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기본공제 신청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세수효과 추계³⁾
 - 총급여규모별 기본공제 신청 인원 적용 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중복자) 제외
 -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모두 다른 연도에 비해 상위소득 구간의 인원수 증가율이 매우 높았던 2021년, 2022년을 제외하고 연평균 증가율 산출

[표 9] 기본공제 제도에 물가연동제 도입 시 1인당 세수효과 : 근로소득세

(단위: 백만원)

총급여 규모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1천만 이하	-	-	-	-	-	-
1.5천만 이하	0.00	0.00	-0.01	-0.01	-0.01	-0.01
2천만 이하	0.00	0.00	-0.01	-0.01	-0.01	-0.01
3천만 이하	0.00	0.00	-0.01	-0.01	-0.01	-0.03
4천만 이하	-0.01	-0.01	-0.02	-0.03	-0.03	-0.04
4.5천만 이하	-0.01	-0.02	-0.02	-0.03	-0.04	-0.04
5천만 이하	-0.01	-0.02	-0.03	-0.03	-0.04	-0.05
6천만 이하	-0.01	-0.02	-0.03	-0.04	-0.05	-0.06
8천만 이하	-0.01	-0.03	-0.04	-0.05	-0.10	-0.12
1억 이하	-0.02	-0.05	-0.07	-0.09	-0.11	-0.13
2억 이하	-0.04	-0.07	-0.11	-0.14	-0.17	-0.21
3억 이하	-0.04	-0.08	-0.11	-0.15	-0.19	-0.22
5억 이하	-0.04	-0.08	-0.11	-0.15	-0.18	-0.22
10억 이하	-0.04	-0.08	-0.11	-0.15	-0.18	-0.22
10억 초과	-0.04	-0.08	-0.11	-0.15	-0.18	-0.22

3) 종합소득세는 기본공제 적용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인원 통계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규모별 결정세액이 있는 인원 수 및 증가율 사용

[표 10] 기본공제 제도에 물가연동제 도입 시 1인당 세수효과 : 종합소득세

(단위: 백만원)

종합소득금액 규모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1천만 이하	0.00	0.00	-0.01	-0.01	-0.01	-0.01
2천만 이하	0.00	-0.01	-0.01	-0.01	-0.01	-0.02
3.5천만 이하	-0.01	-0.02	-0.03	-0.03	-0.04	-0.05
4천만 이하	-0.01	-0.02	-0.03	-0.04	-0.05	-0.06
5천만 이하	-0.01	-0.02	-0.03	-0.04	-0.05	-0.06
6천만 이하	-0.01	-0.04	-0.05	-0.07	-0.08	-0.10
8천만 이하	-0.02	-0.04	-0.06	-0.07	-0.09	-0.11
1억 이하	-0.02	-0.04	-0.08	-0.11	-0.14	-0.16
2억 이하	-0.03	-0.06	-0.08	-0.12	-0.15	-0.18
3억 이하	-0.03	-0.06	-0.09	-0.12	-0.15	-0.19
5억 이하	-0.04	-0.07	-0.10	-0.13	-0.16	-0.19
7억 이하	-0.04	-0.07	-0.10	-0.13	-0.16	-0.20
10억 이하	-0.04	-0.07	-0.10	-0.13	-0.17	-0.21
10억 초과	-0.04	-0.07	-0.10	-0.13	-0.16	-0.19

[표 1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기본공제 적용 인원 증가율

총급여 규모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16-2020 연평균
합계	6%	7%	7%	1%	6%	6%	5.2%
1천만 이하	-	-	-	-	-	-	-
1.5천만 이하	-10%	-9%	-8%	-8%	-3%	-3%	-8.7%
2천만 이하	2%	1%	-24%	-16%	2%	-5%	-9.9%
3천만 이하	7%	10%	18%	-2%	1%	-1%	8.1%
4천만 이하	9%	7%	13%	3%	7%	8%	7.7%
4.5천만 이하	7%	8%	12%	5%	7%	8%	7.8%
5천만 이하	6%	9%	10%	5%	5%	8%	7.3%
6천만 이하	4%	8%	9%	5%	5%	8%	6.4%
8천만 이하	5%	5%	5%	3%	4%	7%	4.4%
1억 이하	15%	10%	7%	6%	7%	9%	9.4%
2억 이하	10%	11%	6%	7%	21%	17%	8.5%
3억 이하	18%	16%	8%	14%	36%	17%	13.9%
5억 이하	8%	16%	15%	12%	27%	16%	12.9%
10억 이하	20%	11%	11%	13%	23%	17%	13.5%
10억 초과	24%	6%	7%	19%	31%	7%	13.7%

주: 결정세액이 있는 자 기준

[표 12]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증가율

종합소득금액 규모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16-2020 연평균
합계	10%	8%	9%	2%	2%	12%	7.1%
1천만 이하	7%	6%	8%	0%	-29%	6%	5.1%
2천만 이하	11%	11%	9%	1%	16%	10%	7.9%
3.5천만 이하	13%	10%	11%	4%	22%	17%	9.4%
4천만 이하	14%	9%	11%	4%	25%	18%	9.2%
5천만 이하	13%	7%	11%	4%	25%	16%	8.6%
6천만 이하	13%	6%	11%	3%	23%	16%	8.0%
8천만 이하	13%	5%	10%	3%	20%	15%	7.8%
1억 이하	13%	5%	10%	5%	16%	13%	8.0%
2억 이하	13%	5%	9%	6%	17%	13%	8.1%
3억 이하	14%	7%	8%	6%	17%	12%	8.8%
5억 이하	11%	7%	9%	5%	17%	15%	7.8%
7억 이하	14%	7%	7%	10%	14%	16%	9.3%
10억 이하	11%	8%	12%	8%	16%	16%	9.9%
10억 초과	16%	4%	10%	16%	12%	10%	11.6%

주: 종합소득세의 경우 결정세액이 있는 기본공제인원 수 통계가 제공되지 않고, 기본공제적용 인원수(2022년 귀속 1,027만명)와 결정세액이 있는 인원수(2022년 귀속 764만명)의 차이가 커 결정세액이 있는 인원 수 증가율 사용

(3) 추계 결과

-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기본공제금액을 매년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할 경우 소득세는 2025~2029년 5년간(징수기준) 5조 6,22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소득 발생연도 기준으로는 2024~2029년 6년간 6조 43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표 13] 기본공제 제도에 물가연동제 도입 시 총 세수효과 : 근로소득세

(단위: 억원)

총급여 규모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1,523	-3,051	-4,765	-6,761	-9,823	-13,400
1천만 이하	-	-	-	-	-	-
1.5천만 이하	-2	-4	-5	-6	-7	-7
2천만 이하	-10	-16	-21	-25	-29	-31
3천만 이하	-60	-121	-190	-270	-363	-1,177
4천만 이하	-151	-303	-474	-672	-901	-1,166
4.5천만 이하	-79	-159	-249	-353	-474	-614
5천만 이하	-80	-160	-249	-352	-470	-606
6천만 이하	-153	-302	-466	-653	-864	-1,104
8천만 이하	-236	-459	-695	-955	-1,987	-2,491
1억 이하	-268	-545	-864	-1,244	-1,694	-2,225
2억 이하	-427	-863	-1,358	-1,940	-2,623	-3,419
3억 이하	-39	-82	-136	-204	-289	-395
5억 이하	-12	-26	-42	-62	-88	-119
10억 이하	-4	-8	-13	-20	-28	-38
10억 초과	-1	-2	-3	-4	-6	-8

주: 귀속연도 기준

[표 14] 기본공제 제도에 물가연동제 도입 시 총 세수효과 : 종합소득세

(단위: 억원)

종합소득금액 규모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801	-1,664	-2,689	-3,884	-5,240	-6,830
1천만 이하	-56	-110	-167	-231	-302	-382
2천만 이하	-77	-154	-241	-343	-461	-597
3.5천만 이하	-187	-380	-604	-870	-1,185	-1,557
4천만 이하	-39	-79	-126	-180	-245	-322
5천만 이하	-57	-115	-181	-258	-349	-455
6천만 이하	-41	-132	-206	-293	-394	-512
8천만 이하	-88	-176	-274	-389	-522	-676
1억 이하	-53	-106	-242	-344	-462	-599
2억 이하	-130	-261	-409	-632	-851	-1,104
3억 이하	-34	-68	-107	-154	-208	-286
5억 이하	-22	-44	-69	-98	-132	-171
7억 이하	-8	-16	-26	-38	-51	-67
10억 이하	-5	-10	-16	-23	-34	-45
10억 초과	-6	-13	-21	-30	-42	-56

주: 귀속연도 기준

[표 15] 기본공제 제도에 물가연동제 도입 시 세수효과 : 소득 발생연도 기준

(단위: 억원)

세목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근로소득세	-1,523	-3,051	-4,765	-6,761	-9,823	-13,400	-39,321	-6,553
종합소득세	-801	-1,664	-2,689	-3,884	-5,240	-6,830	-21,110	-3,518
합계	-2,324	-4,715	-7,454	-10,645	-15,063	-20,231	-60,431	-10,072

- 소득세의 징수시점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합산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5년 5,013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5조 6,221억원(연평균 1조 1,2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25년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5년 2월) 및 2024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25년 5월)로부터 발생하는 세수효과와 2025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 동시 발생⁴⁾

[표 16] 기본공제 제도에 물가연동제 도입에 따른 세수효과 : 징수기준

(단위: 억원)

세목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근로소득세	-3,810	-5,527	-6,761	-9,823	-13,400	-39,321	-7,864
종합소득세	-1,202	-2,096	-3,202	-4,481	-5,918	-16,900	-3,380
합계	-5,013	-7,623	-9,962	-14,304	-19,319	-56,221	-11,244

4)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 신고분부터 개정안을 적용함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경우 법 시행 첫 해인 2025년은 전년도 귀속소득분에 대한 세수효과와 당해연도 세수효과가 동시에 발생함. 다만, 2025년 2월 간이세액표가 개정되어 3월 원천징수분이 납부되는 4월부터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2025년에는 당해연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와 9/12(9개월분)가 반영되고, 나머지 3/12(3개월분)은 2025년(연말정산 시)에 반영되며, 2025년부터는 당해 귀속연도 세수효과가 전부 당해연도에 발생함. 종합소득세의 경우 당해연도에 전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분 및 당해연도 중간예납분에 대한 세수효과를 반영함.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박지원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지원	02-6788-4662	jwpark1209@assembly.go.kr